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8
----------	-----

2023.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7. 이향숙 의원 대표발의(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이향숙 의원)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다양한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안 제2조)

다.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기능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마.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1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어르신에게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르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음.

2 조례안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지역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축예정인 경로당 시설을 특화된 시니어센터에 해당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기존 경로당인 학리경로당 등을 포함한 6개 경로당을 종전보다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축하면서 경로당 부지를 활용한 지역의 복합문화 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추가 확보된 공간을 북카페 및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음

[표] 신축예정 경로당 현황

연번	경로당명	소재지	준공일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소요예산(천원)	비고
					전	후		
1	학리경로당	논현동 109-1	78.1.28.	163.3	158.3	468.75 (▲310.45)	3,573,833	2023년 6월 준공 예정
2	삼성경로당	삼성동 100-8	83.4.6.	157.6	172.7	459.88 (▲287.18)	3,590,659	2023년 12월 준공 예정
3	도곡1경로당	도곡동 950-10	77.9.12.	278.8	130.9	728.23 (▲597.33)	5,647,236	2024년 6월 준공 예정
4	선정경로당	역삼동 683-19	79.10.29.	186.7	170.6	605.42 (▲434.82)	4,696,255	2024년 6월 준공 예정
5	재너머경로당	청담동 16-16	82.7.30.	382.5	291.1	1,119.35 (▲1,410.45)	5,786,288	2024년 12월 준공 예정
6	은곡경로당	세곡동 360-18	80.6.30.	410	97.5	728.05 (▲630.55)	3,624,292	2024년 12월 준공 예정

- 그러나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제36조)¹⁾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을 뿐 어르신과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써 시니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또는 조례상 근거가 미흡하여 복합화 추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임
- 어르신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법적 또는 조례상 근거가 없이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설치·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없이 동주민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유지·보수 등의 업무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앞으로 조성될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이 어르신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 문제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한 명확한 운영상 기준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런 점에서 조례안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있어 구청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어르신복합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1)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노인의 문화·여가 지원 등 4개 항목을 안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안 제4조(업무 및 기능)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여가지원
2. 노인의 교육지원
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의 수행

- 다른 연령대층의 경우에는 맞춤형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어르신의 경우에는 연령분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맞춤형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 재사회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적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의 운영상 내실화를 위한 관심과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7조)

- 어르신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책무를 집행부로 할 경우 일선 동 주민센터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관리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맡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방식을 집행부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로서 안 제7조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향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
----------	-----

발의연월일: 2023. 4. 7.

발 의 자: 이향숙·이호귀·한윤수·전인수·
김진경·노애자·이도희·김광심 의원
(이상8인)

1. 제안이유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다양한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안 제2조)
- 다.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 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기능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마.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여가지원
2. 노인의 교육지원
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수행

제5조(이용대상)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복

합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은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번	시설명	위 치
1	학리시니어센터	논현동 109-1번지
2	삼성시니어센터	삼성동 100-8번지